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9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서미화・이수진・황정아

조인철 · 안태준 · 오세희

박범계 • 김 윤 • 문금주

이광희 · 황명선 · 백승아

박희승 · 김현정 · 박지원

강준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피해자 사망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맡기는 반의사불 벌죄 적용은 사건의 접수와 조사, 처벌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목적에 치중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없이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 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때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및 제9조의2).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 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를 "피해자와"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범죄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및 제312조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의 죄
- 2. 「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의 죄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 항제3호의 죄

제9조제1항 전단 중 "성행 등을"을 "성행 및 재범 위험성 등을"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피해자의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	제1조(목적)
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	
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	
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u>가정폭력</u>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	
<u>을 가꾸며 피해자와</u> 가족구성	
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	
로 한다.	
<u><신 설></u>	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적용
<u><신 설></u>	<u>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적용</u> <u>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u>
<u><신 설></u>	
<신 설>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u><신 설></u>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신 설>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
<신 설>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 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
<신 설>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 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 항 및 제312조제2항과 「정보
<신 설>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 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 항 및 제312조제2항과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신 설>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 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 항 및 제312조제2항과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신 설>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 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 항 및 제312조제2항과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② <u>다음 각 호의</u> 경우에는 제1 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삭 제>

<u>속폭행)제1항ㆍ제2항의 죄</u>						
2. 「형법」제283조(협박, 존속						
협박)제1항·제2항 및 제286 조(미수범)의 죄						
및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						
<u>성행 및 재범 위험</u>						
성 등을						
②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						
<u>된</u>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 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 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삭 제>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 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 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를 철회한 경우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9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저	9조의	[2(상담조	:건무 기	기소수	广예,) –
				다	만,	가
	<u>정폭</u>	럭범죄가	다시	발생	할	위
	험이	있다고	판단도]는	경우	-에
	는 그	L러하지	아니하	<u>다.</u>		